

유상표기 광고심의 결과

1. 표기 기준

표기 대상

- 역세권 반경 600m 반경내의 시설 단체, 업체명
※ 무상표기대상, 유흥업소 등 미풍양속 저해업체 제외

표기 방법

- 무상표기 후 여백(무상표기 발생시 유상표기 삭제)

준수 사항

- 당점, 글씨체, 글자크기, BI(CI)표기 기준 등
- 업체설명, 출구안내 등 부가정보 병행표기 불가
- 기타 안내표기명 표준기준 준수

2. 유상표기 광고심의 요청사항

- 심의 요청 : 2역 1개 광고
- 심의 결과

연번	호선	역사	광고주	기간	심의결과
1	5	강동역	양병원	계침 후 ~ 1년	승인
3		길동역		계침 후 ~ 1년	승인

끝.